

대전지방법원 2021. 7. 15 선고 2020가단124133 판결 [사해행위취소]

전 문

원 고 A

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소연

피 고 B

소송대리인 변호사 정용환

변 론 종 결 2021. 6. 24.

판 결 선 고 2021. 7. 15.

주 문

1.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.
2.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.

청 구 취 지

별지 목록 기재 1, 2 각 부동산에 관하여, C와 피고 사이에 체결한 2020. 3. 24.자 증여계약을 취소하고, 피고는 C에게 대전지방법원 등기과 2020. 4. 7. 접수 제23335호로 경료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, 별지 목록 기재 3 부동산(이하 별지 목록 기재 1, 2, 3 각 부동산을 ‘이 사건 각 부동산’이라 한다)에 관하여, C와 피고 사이에 체결한 2020. 3. 24.자 증여계약을 취소하고, 피고는 C에게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 등기계 2020. 4. 8. 접수 제3848호로 경료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.

이 유

1. 인정사실

가. C는 2017. 8.경 원고를 대리한 원고의 부친인 D와 C가 원고에게 충남 금산군 E 소재 F태양광발전소 설치 공사(이하 '이 사건 공사'라 한다)를 공사대금 440,000,000원(부가가치세 포함), 공사기간 2018. 3. 5.부터 2018. 4. 30.까지로 정하여 도급 주는 내용의 도급계약을 작성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를 도급 주었다.1) 나. C는 2019. 1. 8. 원고에게 지급할 이 사건 공사의 공사대금이 80,000,000원 남아 있는 상태에서 '이 사건 공사의 공사대금 잔금이 120,000,000원 남아 있음을 확인하고 이를 2019. 3. 8.까지 변제하고 이를 지체할 때에는 연 24%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'는 취지의 채무변제(준소비대차)계약공정증서(이하 '이 사건 공정증서'라 한다)

다. C는 2019. 3. 13. 원고에게 남아 있는 이 사건 공사대금 80,000,000원을 지급하였다고, 원고는 같은 날 C에게 이 사건 공사의 공사대금 440,000,000원을 전액 영수하였다는 취지의 영수확인서(이하 '이 사건 영수확인서'라 한다)를 작성하여 교부하였다.

라. C는 2020. 3. 24.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각 증여(이하 '이 사건 각 증여'라 한다)를 원인으로 법률상 배우자인 피고 명의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.

[인정근거] 다툼 없는 사실, 갑 제1, 2호증의 각 기재(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), 변론 전체의 취지

2.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

원고는 이 사건 각 증여계약 당시의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한 120,000,000원의 채권 중 이 사건 공정증서 작성 이후 C로부터 변제 받은 80,000,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40,000,000원의 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사해행위인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이 사건 각 증여계약의 취소 및 그 원상회복을 구한다.

그러나 사해행위취소의 경우 사해행위 당시 C의 적극재산의 가액이 소극재산의 가액을 초과하는 상태에 있을 것을 요건으로 하는데, 우선 원고는 C의 이 사건 각 증여계약 당시 채무초과 사실에 관하여 아무런 주장입증을 하고 있지 않다.

이에 관하여 살피건대, 을 제12 내지 2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, ① C는 이 사건 각 증여계약 당시 이 사건 각 부동산 외에도 2017년경 6,800만 원에 매수한 충남 금산군 E 전 1,680㎡, 위 토지 지상 건축 중이던 F태양광발전소 등 다른 적극재산이 있었던 사실, ② C는 이 사건 각 증여계약 직후인 2020. 5. 15.경 충북 옥천군 G 전 2,273㎡를 110,000,000원에 매수하기도 한 사실이 인정되고, C가 이 사건 각 증여계약 당시 원고에 대한 이 사건 공정증서 중 40,000,000원의 채무 이외에 어떠한 소극재산이 있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어떠한 객관적인 자료도 전혀 없으므로,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C가 이 사건 각 증여계약 당시 채무초과 상태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.

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이 사건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 청구는 당사자들의 다른 주장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.

3. 결론

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.

판사 심우성

별지

부동산의 표시

1. 대전광역시 동구 H 전 954㎡
2. 대전광역시 동구 H
 - 목조 스테이지붕 단층 주택 60.27㎡
 - 목조 합석지붕 단층 부속건물
29.70㎡
 - 목조 합석지붕 단층 부속건물
6.88㎡
3. 충청북도 영동구 I 답 1863㎡. 끝.

1) 도급계약서의 기재와 달리 이 사건 공사의 실제 공사대금이 얼마인지는 명확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.